

이용자 고지

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

주식회사 마스오토

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은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입니다. 이에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자에게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고지합니다.

1. 실증특례 사실 (확인서 사본 첨부·게시)

- 유효기간 : 2026년 7월 20일~2028년 7월 19일
-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의 내용 :
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등을 경유하여
주요 물류센터 간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실증

2. 이용자 유의사항

- 실증특례 대상 법령
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
제 21조 (연결자동차 금지)
- 실증특례 조건
피견인자동차 1대로 제한,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에 전자제어제동
장치(EBS) 장착 및 연결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, 피견인자동차
연결된 상태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
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 1을 포함한 안전운행요건 충족, 실증 운행 시
안전을 고려하여 운행속도는 시속 85km 이하로 제한

3. 이용자 보호방안

- 대인배상 무한, 대물배상 10억원 이상 등 한도로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

4.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
-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환경·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
안전한 보호·처리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관리책임자로 연락하여 주
시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

관리책임자명 : 박일수

연락처 : 070-7728-8834